

# 삼호읍 종합감사 결과

## I 감사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삼호읍
- 감사기간 : 2017. 5. 23 ~ 2017. 5. 26(4일간)
- 대상기간 : 2015. 7. 7 ~ 2017. 5. 22(2개년)
- 감사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사무인계·인수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그 사무의 한계를 명확히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전출, 보직 변경자 총무팀장 김○○외 2명이 사무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li> </ul> <p>【지방자치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0조】</p>
민방위대 자원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호읍에서는 2016. 1. 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편성의무자원 2,351명 중 제외자원 1,642명(당연 제외 1,623, 주민등록말소자 19)을 제외하고 709명(신규2, 기존707)을 2016년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리 민방위 대장과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통지하지 않았음.</li> </ul> <p>【민방위기본법 제20조】</p>
민원사무처리 지연 및 전산처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사무 접수처리 시 민원업무 담당자의 접수확인 지연으로 총 2건(주민등록증 분실신고)에 대하여 지연 처리하거나, 처리기간 내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담당자의 주의 소홀로 새울행정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지연입력(5건)한 사실이 있음.</li> </ul> <p>【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9조】</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주민등록법 및 가족 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부과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신고지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최○○ 외 1인에 대하여 총 50,000원을 과다부과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박○○ 외 8명에 대하여 총 70,000원을 과다부과, 김○○ 외 4명에 대해 108,000원을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음.            【주민등록법 제16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li> </ul>
세출분야	특근매식비 현금 영수증 미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 적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행부 예규) 비목별 세부집행 지침】</li> </ul>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로 급량비는 기준단가를 적용(예산편성기준 1식 7,000원) 하여 현금 지급하고 영수증을 징구토록 되어 있으며, 단체급식 및 다과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재를 원칙으로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참가인원(민간인) 27명인 민관 협력활성화사업 선진지 견학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301-09) 과목에서 1일 행사에 2015년 총 1,829,560원을 식비 및 간식비로 지출하였고, 2016년 총 1,253,750원을 식비와 간식비, 선불구입비로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무분야	취득세(건축물,이륜차) 납부 미확인 및 과세자료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건설(주)와 16명이 용앙리 ○○번지와 16건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b>【지방세법 제20조】</b></li> </ul>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미신고 납부한 32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민세(재산분) 39건 10,878,6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b>【재무과-17483(2015.7.13.)호, 재무과-17115(2016.7.14.)】</b></li> </ul>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처리 시 인지세 징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용신고 등록업무 처리 시 3,000원을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5.8.28.부터 2016.12.29.까지 사용신고 등에 관한 이륜자동차업무를 처리하면서 전남영암카2981 외4건에 대하여 수입인지 15,000원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인지세 징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b>【인지세법 제1조 1항, 제3조제1항4호, 제8조. 수입인지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b></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사회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카드 회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에 따르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복지 카드(장애인등록증)등을 회수 및 폐기하게 되어 있음에도 추봉단 등 41명의 장애인 사망자에 대하여 복지카드를 회수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사업안내】</li> </ul>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구비가능 서류 요청 및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권 신청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을 듣고 본인 동의 서명을 제출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5년부터 현재 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343가구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구비가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를 신청 가구별로 직접 발급받도록 하여 징구한 사실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li> </ul>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연간계획 미수립 후 이행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초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분기별 1회 방문상담을 통해 자활지원을 위한 욕구조사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소득과 생활 실태변동자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등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하나 2015~2016년 연간계획 수립 후 대상자 469세대 방문하지 않는 등 대상자 관리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1항(확인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농업분야	농지임대차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농지는 '96. 1. 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1㏊미만의 상속받은 농지 8년이상 영농한 농업인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미만의 농지 등 농지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농지 임대차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2015년 4건, 4,485㎡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농지임대차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li> </ul> <p>【농지법 제23조, 시행령 제24조】</p>
	가축통계조사 실시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통계조사는 농가별로 전수조사하여 축산행정 및 가축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 임에도 2015년 상반기 가축통계조사시 이장 및 마을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조사내용, 조사자 날인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군에 보고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li> </ul> <p>【산림축산과-12767(2015.5.14.)】</p>
건설도시 분야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호 아산소하천 준설사업의 2건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관리비는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반영 하였으나 준공하면서 환경관리비 정산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안되는 인건비 및 청소도구 물품구입비로 정산처리 하였다. 따라서 발주부서에서는 준공이전 환경관리비 정산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하여 총 금액 171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하였음.</li> </ul> <p>【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3항, 동법시행규칙제61조2항】</p>

분야별	제 목	주요의반사항
건설도시 분야	건설 폐기물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호읍에서는 우산정 마을 확포장공사와 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 및 아스콘) 61.2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확인을 하지 않은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음.</li> </ul>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p>